

# 법인차량사용예규

**제1조(목적)** 이 예규는 법인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 예규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(이하 '법인차량'이라 한다)의 운영 및 관리에 적용한다.

② 법인차량은 법인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3조(차량의 관리)** ① 법인차량의 총괄 관리는 사무처장이 담당한다.

② 각 차량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.

③ 차량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차량의 운행 및 정비 관리
2. 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
3. 유류비 및 정비비 관리
4. 보험 및 각종 세금 관리
5.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

**제4조(사용 신청)** ① 법인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긴급한 경우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용 후 3일 이내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차량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사용 목적
2. 사용 일시
3. 목적지 및 경로
4. 탑승 인원
5. 운전자

**제5조(사용 승인)** ① 차량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 배정한다.

1. 공동대표 및 임원
2. 외부 기관과의 공식 업무

- 3. 출장 및 현장 방문
- 4. 기타 업무

- ② 사무처장은 차량 배정 현황을 고려하여 사용을 승인한다.
- ③ 차량이 중복 신청된 경우 업무의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.

**제6조(운전)** ① 법인차량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.

- ②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교통법규 준수
  - 2. 안전운전 의무
  - 3.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금지
  - 4. 운행 전 차량 점검
- ③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운행일지)** ①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운행일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- 1. 운행 일시
  - 2. 운행 목적
  - 3. 출발지 및 도착지
  - 4. 주행거리(출발 시 계기판, 도착 시 계기판)
  - 5. 유류 주입량 및 금액
  - 6. 운전자 및 동승자
- ③ 운행일지는 월별로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유류 및 정비)** ① 유류 주입 및 정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정기 점검 및 정비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  - 1. 일상 점검: 운행 전 운전자가 실시
  - 2. 종합 검사: 법령에서 정한 기간
- ③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.

**제9조(사고 처리)** ① 차량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부상자 구호
  2. 경찰 신고
  3. 보험회사 신고
  4.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
- ②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촬영 및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- ③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 등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.

**제10조(개인 사용 금지)** ① 법인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 사용으로 간주한다.
1. 출퇴근 용도
  2. 주말 및 휴일의 사적 외출
  3. 업무와 무관한 장소 방문
  4. 가족 또는 친지 탑승
- ③ 개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직원징계예규에 따라 징계하고,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용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차량의 반납)** ① 차량 사용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한다.

1. 차량 내·외부 청결 상태
  2. 유류 잔량(1/4 이하 시 주입)
  3. 차량 파손 여부
  4. 운행일지 작성 완료
- ② 차량 반납 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위반 시 조치)** ① 이 예규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.

1. 차량 사용 정지
  2. 직원징계예규에 따른 징계
  3. 손해 발생 시 변상
- ② 음주운전,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**제13조(시행일)** 이 예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